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66

발의연월일: 2022. 1. 26.

발 의 자:김교흥·강준현·허종식

강선우 · 김수흥 · 윤관석

김회재 · 이성만 · 박영순

유동수 • 이상헌 • 김영주

허 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
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	례)
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	
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	
예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u>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
	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
	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